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8.

발 의 자 : 김희정 · 권영진 · 김도읍
최수진 · 이종배 · 박준태
김승수 · 김태호 · 백종현
김은혜 · 김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12·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,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,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

거을 마련하고,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).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
2.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예방계획은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3(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)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(이하 “위험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.

1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의 서식지 및 개체수 등에 관한 사항
2.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
3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유인요소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4. 공항의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4(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

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
 3. 공항과 공항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
 4.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, 지방항공청장, 공항운영자,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5(조류충돌예방·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·관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

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.

1.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·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운영자로 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,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및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1.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</u> <u>2.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3.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<u>② 예방계획은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

<신 설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3(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)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(이하 “위험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.

1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의 서식지 및 개체수 등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2.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및 운항
시간대 등 항공기 운항에 관
한 사항

3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
유인요소 및 관리계획에 관
한 사항

4. 공항의 조류 충돌사고 예방
을 위한 자원 및 업무에 관
한 사항

5.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
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
로 정하는 사항

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실적
과 해당 연도 위험관리계획을
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
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할 지방
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
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
한다.

③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
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4(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
구성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
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
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국토교

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

3. 공항과 공항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

4.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, 지방항공청장, 공항운영자, 항공안전에 관한 학

<신 설>

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
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
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5(조류충돌 예방·관리 위
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공항운
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하기 위하여 조류충돌 예방
·관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
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
법」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
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
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
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
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.

1.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
에 관한 사항

2.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
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·관
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
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

합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운
영자로 하고, 위원은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
공무원,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
원 및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
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
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